



학생인권 주제



2012. 12.

차례

-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뭔가요?
- ◆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 ◆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뭔가요?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뭔가요?

서울시에 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학교, 학생, 교직원, 보호자, 교육청이 지키도록 약속해 놓은 것이라합니다. 서울에 있는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공공교육기관에는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이 있는데 나이가 어리고,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권리를 누리는 생활을 통해 책임도 알게 되고,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10만 명에 가까운 서울시민들이 서명을 했고, 이러한 뜻을 서울시의회가 받아들여 학생 인권조례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합니다.

☞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신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존중받기 위해 학생들이 해야 할 일, 학교가 해야 할 일,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학생인권조례는 크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총칙, 2장 학생인권, 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2장 학생인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학생인권 조례의 원문의 뜻을 살리면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시 쓴 것입니다. 원문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학생인권조례 (<http://www.st-rights.or.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 차별은 안돼!

학생들은 피부색이 어찌하든, 여자든 남자든, 어떤 종교를 믿든, 몸이 불편하든 아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어디에 살든,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생각이 같은 다르든, 아팠거나 별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은 안 돼!

차별은 싫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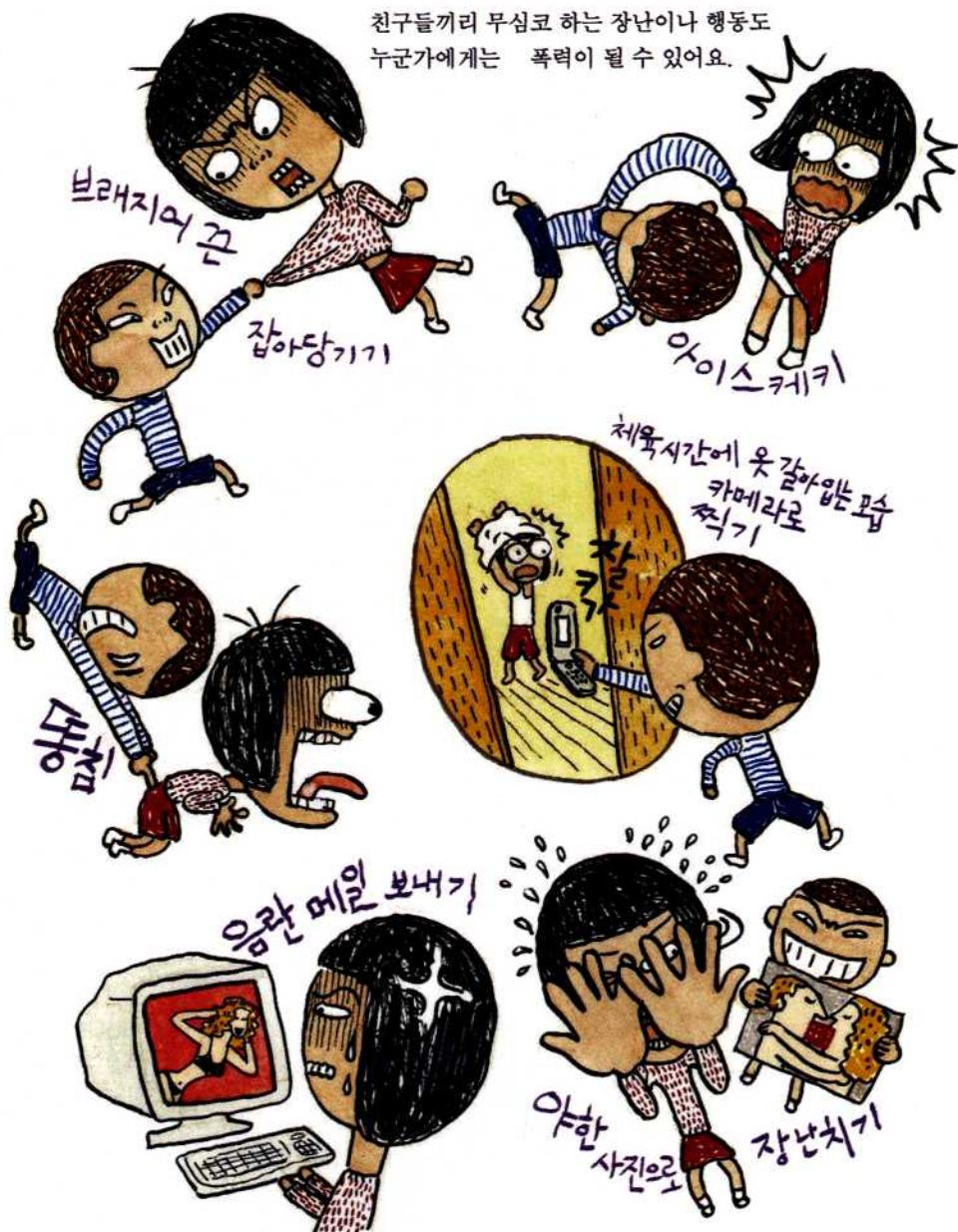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라는 것 말고도, 이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차이'라고 해요.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형가게에 있는 인형처럼 똑같은 모습과 표정을 하고 있다면 정말 지루하고 따분할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의 직업이 다 의사라면 아플 때야 편리 하겠지만 큰불이 나서 꺼야한다거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을 때는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요. 차이가 있다고 해서 따돌리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차별'이라고 해요. 다른 것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 모든 폭력은 이제 그만!

뺏기, 때리기, 놀리기, 괴롭힘, 따돌림, 욕설, 기합주기, 체벌 등 날 괴롭히는 모든 것 **OUT!**
어른들도! 우리들도!

재미로 그랬다고?



체벌이 꼭 필요할까?

체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체벌이 없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도, 교실 분위기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도 없으니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체벌에 대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소중한 내 몸, 내가 지킨다!



때리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에요! 때로는 심한 꾸지람이나 헐뜯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큰 소리로 무섭게 이야기해야 듣는 사람이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면서 심하게 나무라면 오히려 반항심이 들지는 않나요? 무서워서 거짓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말한 사람이 볼 때만 그 말을 듣는 척 하기도 하고요.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야단칠 때 상처를 받듯이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이 큰 소리로 말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의 몸을 멍들게 하는 것도 폭력이지만,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것도 큰 폭력이지요.

제7조 학교는 안전해야해!

다칠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차보다 사람이 먼저!



- ▣ 학교 주변 통학로에는 주차 금지! 천천히 조심조심 운전해주세요.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 ▣ 어린이들이 맑껏 뛰어놀기 위해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안전을 위해 어린이들을 뛰어놓지 못하도록 해선 안돼요! 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어린이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요!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 공부는 즐겁게!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즐겁게 배우게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은 보장해야 해.

제9조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요!

방과 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는 억지로 남아서 하지 않도록 학생의 뜻을 존중해야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해.



공부가 너무 무거워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학교 수업, 끝나면 다시 이 학원, 저 학원……. 지나치게 많은 공부 시간, 하루에도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서 받는 수업 때문에 어깨를 퍼기 힘들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만큼 공부하고, 그 뒤에는 반드시 쉬거나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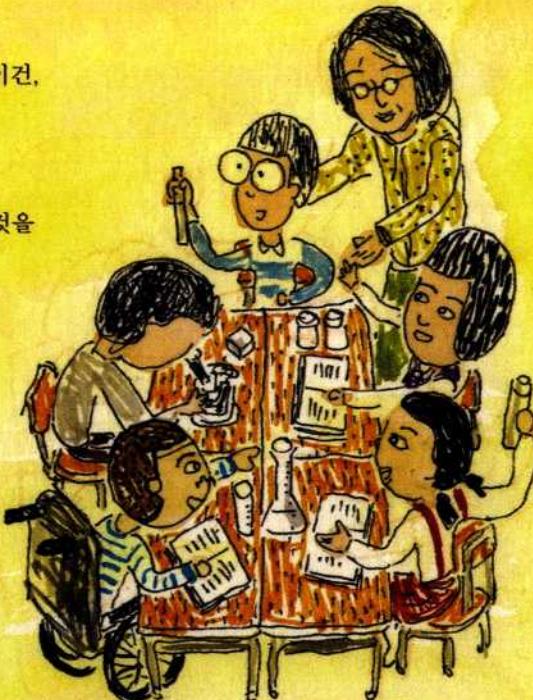


나누면서 배워요

가난한 친구이건, 장애가 있는 친구이건,
이주 노동자 자녀이건,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을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 주어야 해요.

교육 방법도 다양해야 해요.
무조건 선생님은 앞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 내용을 받아 적는
수업만 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배워 가는
수업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정한 과목과 시간표대로 공부해야 해요. 그래서 배우고 싶지 않은 것까지 배워야 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하는 일도 많지요. 나라에서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마음대로 바꾸는 일도 많고, 부모가 아이들이 받을 교육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일도 많아요. 이렇게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생각은 무시한 채 교육 정책과 내용이 정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무대에 올라서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재능을 찾아내고 키워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에요.

제10조 쉬는 것도 권리야!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요.

제11조 즐기는 것도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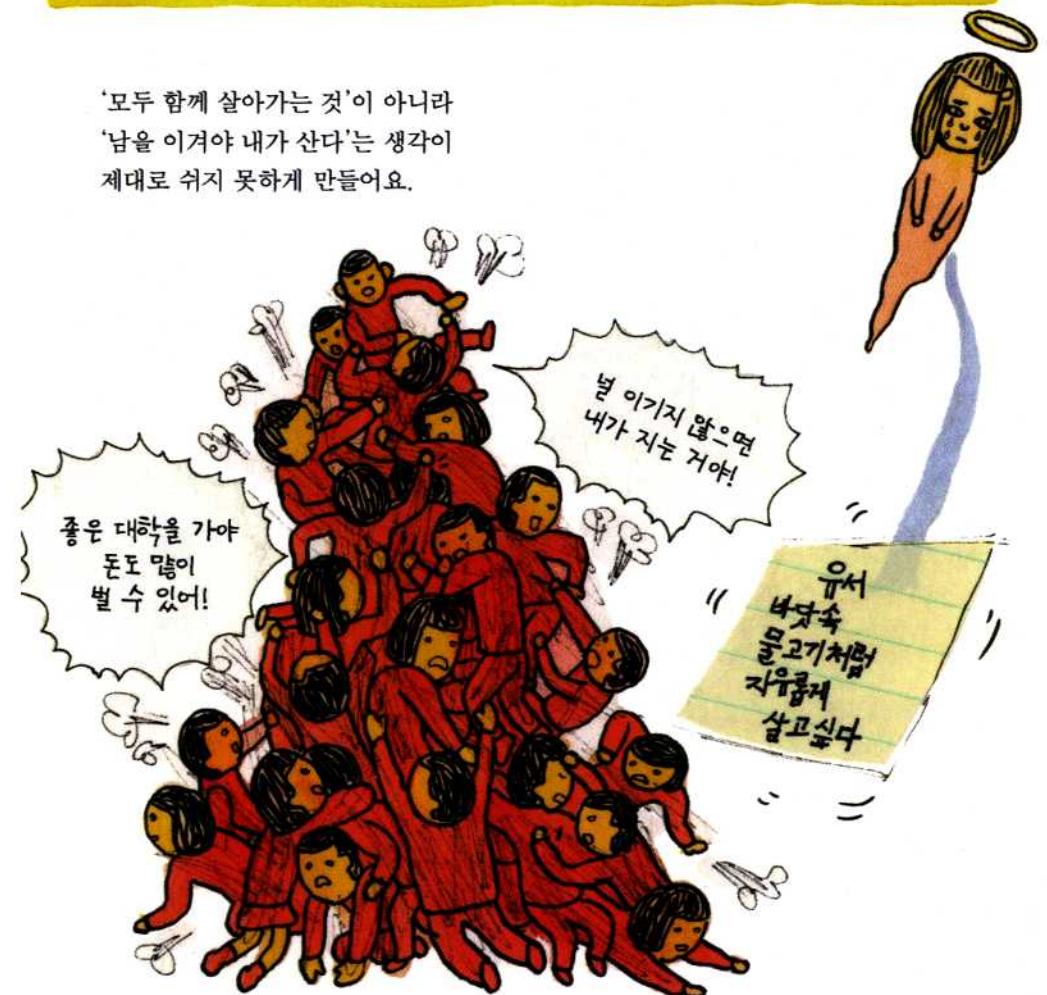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해요.



즐겁게 공부하고 충분히 놀 수 없을까?

기계도 기름칠을 하지 않고 쉴 새 없이 계속 돌리면 고장이 나요. 사람도 쉬지 않으면
이처럼 지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놀이와 휴식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해요. 노는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히
쉬어 주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문화생활도 즐겨야 자기 안에 숨어 있는 능력을
찾아낼 수 있지요. 다시 일을 하고 공부를 할 힘을 낼 수도 있고요.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는 생각이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어린이가 쉬거나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교실은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일 뿐,
아이들이 안전하게 쉬거나 놀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말고는 즐길 거리가 없어요.
다양한 놀이와 문화를 즐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놀려고 해도 놀거리와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와 교육청, 지역 사회는 더 많이 놀 수 있는 장소와 놀거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제12조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실현할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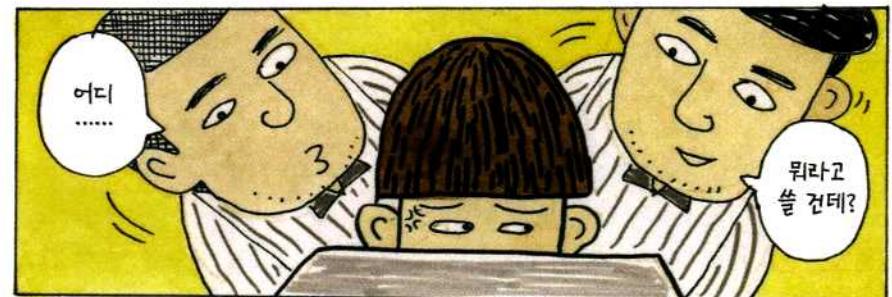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으로 개성을 무시해선 안돼요! 단, 교복은 학생이 참여한 교칙으로 약속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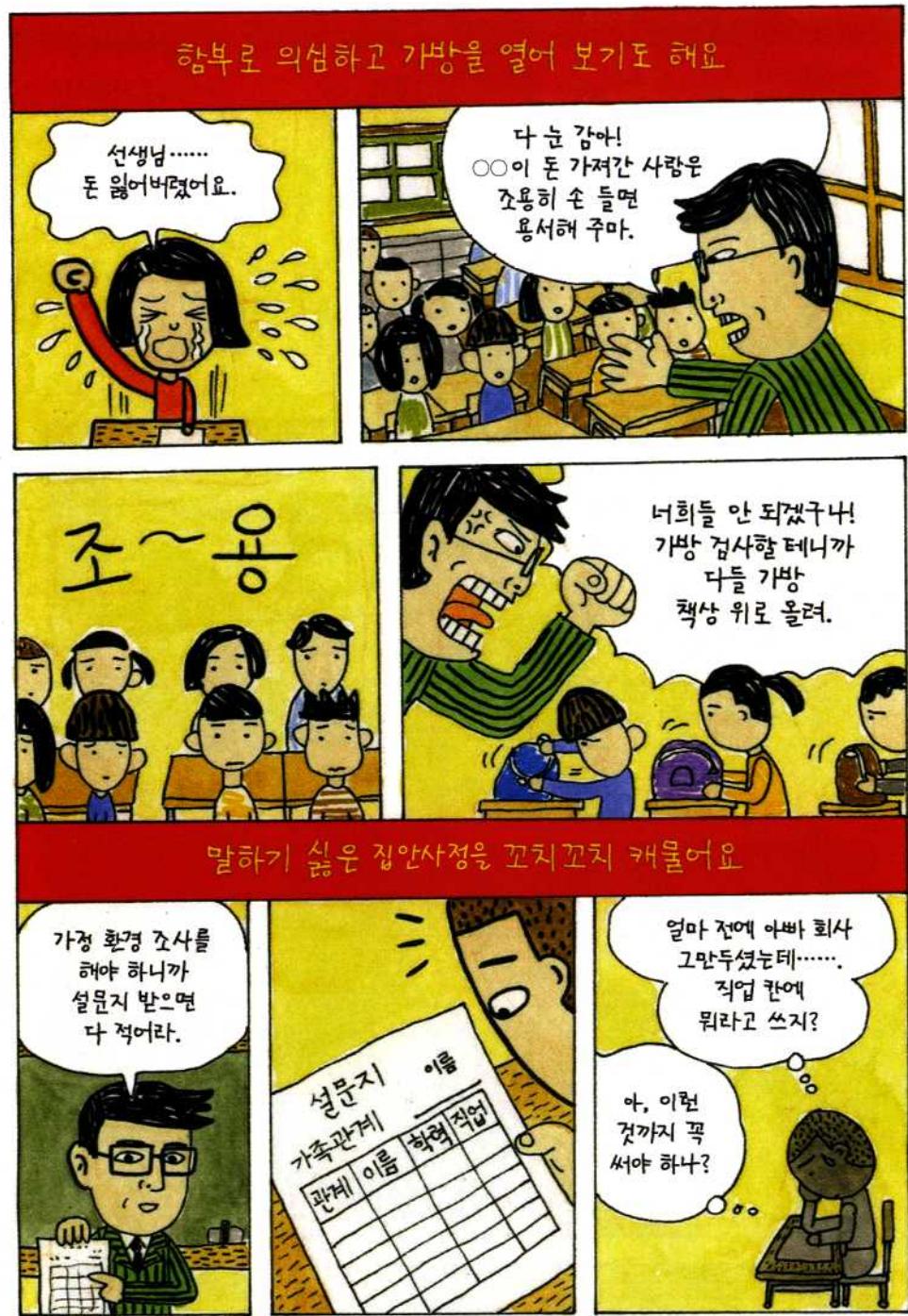
제13조 나만의 비밀은 보호 받아야 해!

학생들이나 교직원의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의 없이 일기, 가방 등 소지품을 검사해선 안돼요.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함께 사용규칙을 만들어가요.

어린이에게도 사생활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을 거예요. 키나 몸무게, 성적, 집안 사정처럼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비밀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비밀을 갖거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남에게 알리지 않을
권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아주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개인의 비밀이나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하고 알려고 할 때가 많아요.





누구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과 머리모양 등을 생각하고 그대로 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또 키, 몸무게, 성적, 집안사정처럼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비밀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비밀을 갖거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남에게 알리지 않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끼리도 개인의 비밀이나 정보를 함부로 남에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제14조 개인정보는 소중해!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꼭 보호받아야 해요!

제15조 정보에 대한 권리!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살펴보고, 고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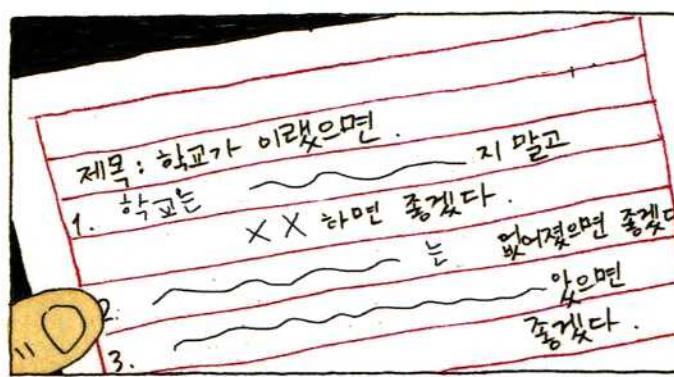
제16조 어떤 생각을 할지는 나의 자유! 학생들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제17조 나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쓰고 함께 모일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

6학년 3반 친구들은 출업을 앞두고 학급 문집을 만들어 추억을 남기기로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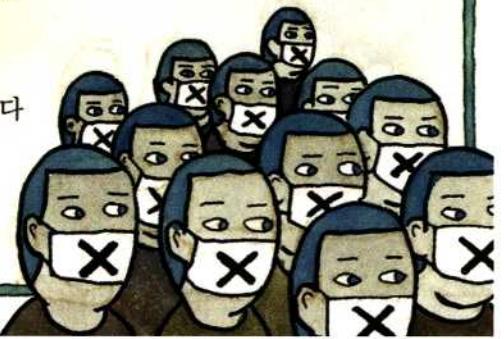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정말 그림 한 점이, 노래 한 곡이 사람들을 위협하게 만들까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사라지겠지요?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저마다 다른 생각을 소리 내어 이야기하지 못하고 모두 똑같은 말만 해야 한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세상은 없을 거예요.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 자치권이 있어! 학생들은 동아리, 학생회 등 자치 활동을 할 권리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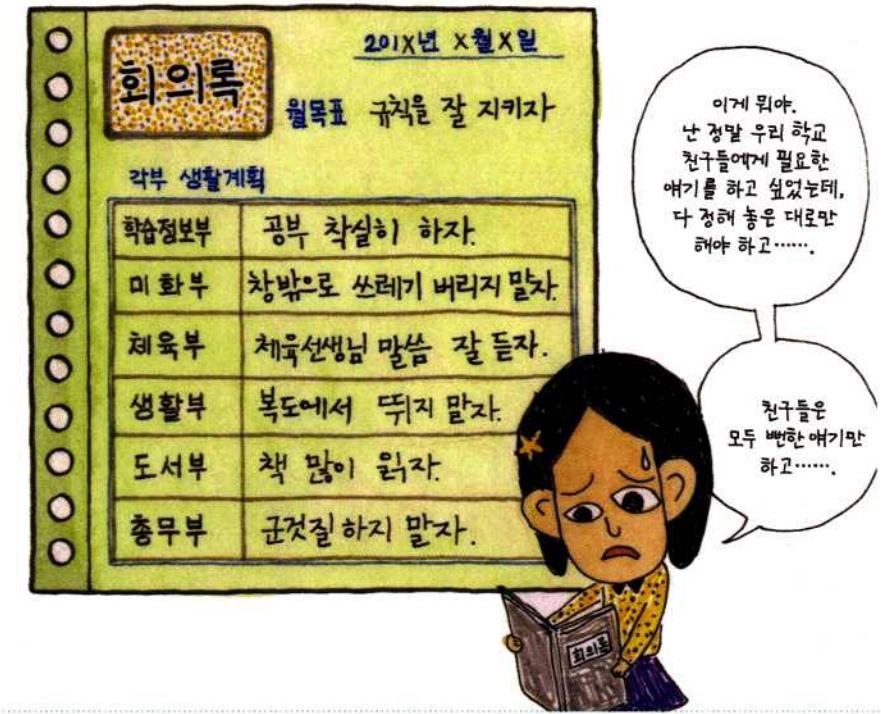
제19조 학교 규칙을 만들 수 있어!

학교 규칙을 만들고 고칠 때 학생이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제20조 참여할 수 있어!

모든 학생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전교 어린이회가 열렸어요



☞ 학생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말해줄 수 있는 대표를 뽑아 회의 주제부터 내용까지 우리들 스스로 의견을 만들 수 있어요. 학급에서 모아진 의견은 전교 어린이회로, 전교 어린이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교장선생님께 전달되어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학교 밖에서 함께 도와야 하는 일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참여단에 참여하여 고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폭력,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22조 건강한 공간!

깨끗한 교실과 화장실, 운동장 등 체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해요.

제23조 건강한 급식!

깨끗하고 안전한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해요.

제24조 적절한 치료!

학생들은 아플 때 학교에서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의 이야기



나라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많은 사람들이 낸 세금에서 나온 돈이에요. 나라에서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다양한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일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부유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질 좋은 점심을 먹는 것도 어린이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나라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따로 급식비를 제공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요.

급식비는 준비물이든 나라에서는 학교를 통해 학교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야 해요. 모든 어린이가 질 좋은 점심을 먹고, 깨끗한 화장실과 교실을 사용하고, 뛰어놀기 좋은 운동장과 휴게실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상담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을 찾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랍니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 벌을 받을 때도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벌 받을 때, 억울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보장!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을 때도 억울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감도 커지겠지요.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 권리라는 함께 지켜야 해!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인권도 함께 지켜야 해요!

제27조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

학생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비밀 보장!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해요. 그래도 존중받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알리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해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해 알렸을 때,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어떤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 교실에서 맞는 일이 일어난다면 언젠가 나도 그 일을 당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니 누가 맞았든 교실에서는 때리거나 맞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데 힘을 합쳐야겠지요!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 더 많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권리를 보장해야 해!

지금 차별받고 있는 약한 친구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해요!



사람과 사람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만이 차별하지 않는 방법일까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섬세하게 살피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29조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도 우리의 권리!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해요.

제30조 인권을 알리는 것도 의무!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제31조 어른들도, 인권을 배워야 해!

교육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인권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교육받는 것 또한 중요한 권리이지요.

학생도, 교직원도, 학부모도 인권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해요!



어린이해설서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전화: 02-3999-080~6

※ 그림 ※

“똑똑똑딱 인권짓기 1- 나도 권리가 있어!”, “조주희”